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10. 21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도로시설안전과	담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박선훈, 주무관 김종현 • ☎ (044)201-3927, 3926, 3931
보 도 일 시		2020년 10월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

-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·적재제한 위반 집중단속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국의 고속도로,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, 지자체,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.
- 특히,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, 시·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.
-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(30~300만 원)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(5만 원, 15점) 등이 부과되고,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.
- ※ (국토부) 도로법의 과태료, (경찰청)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(지자체)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,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

-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**코로나-19**로 인한 **사회적 거리두기**가 1단계로 **완화됨**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**운행제한 위반 차량**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**적재제한 위반차량**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,
 - 특히, 용달차 등 4.5톤 미만의 **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**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**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**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**합동 단속**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”이라면서,
 - “**화주·화물운송업자·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**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시설 안전과 박선훈 사무관, 김종현 주무관(☎ 044-201-3926, 39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